

##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

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「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」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3월 22일

### 대전광역시장

#### 1.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

□ 사업대상 : 만 19 ~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

□ 신청기간 : 2023년 4월 3일 ~ 11월 30일까지 / 상시 접수

※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

□ 주요내용

○ 대출한도 : 최대 1억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-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하나은행)의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, **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**

○ 대출금리 : (기준금리)금융채 24개월 + (가산금리)1.5% (대출실행일 기준)

\*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.5%, 본인 자부담 1.5% 내외

\* 금리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 변동 가능(ex. 총금리(대출승인일 기준) 5% 이하 시 지원금리 4%)

○ 취급은행 : 하나은행 (6개 지점)

- 대전시청지점, 갈마동지점, 오정동지점, 유성구청지점, 대흥동지점, 가오동지점

□ 대출용도 : 주택임차보증금

□ 대출기간 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(2년 단위 2회 연장가능\*, 최장 6년 이내)

※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

※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

\* 기한 연장 요건

-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,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

## 2. 자격요건

- 신청자격 :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· 재직하는 만 19 ~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

(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
- ①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
- ②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
- ③ 미혼 청년

(2) 취·창업자 :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
-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
- ②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
- ③ 미혼 청년

(3) 청년부부 : 우리 시에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

- 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

### <신청자격 유의사항>

- \*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
- \*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
- \*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(포기서 제출자 제외) 사업지원 불가
  - 2022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
  -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
- \*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(기존 거주 주택 불가)
  -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- \*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- \* 소득 산정 시 성과급, 제수당 등도 포함

## □ 대상주택

-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.3%\* 이하의 반전·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
- ※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
- 임대인이 조합·문중·교회·사찰·임의단체인 경우·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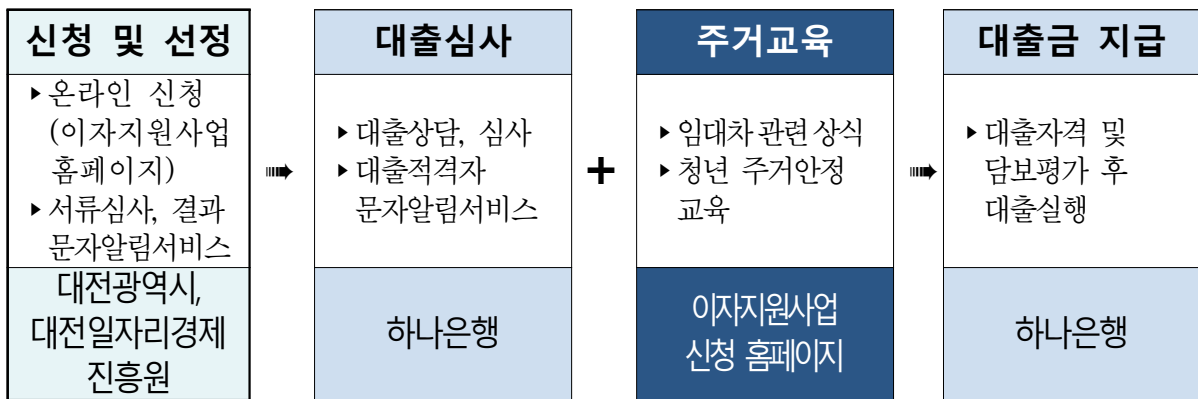
\* 전월세 전환율 7.3% 적용예시

$$\text{계산식 : 전월세전환율} = \frac{\text{월세} \times 12\text{개월}}{(1\text{억}5\text{천만원} - \text{월세보증금})}$$

임차보증금	2억원	1억5천만원	1억원	5천만원	3천만원
월세	0원	30만원	60만원	91만원	103만원

※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'전월세전환율 계산기' 검색하여 계산 가능

## 3. 신청 및 대출절차 /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



※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개인신용도/소득유무/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
-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,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

## 4. 신청접수 및 선정

□ 신청기간 : 2023년 4월 3일 ~ 11월 30일 까지 상시 신청

※ 일일 신청건수 제한(오전 9시 접수시작, 토·일요일 접수 불가, 공휴일 가능)

□ 신청방법 :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s://djhousing.djbea.or.kr>)

온라인 신청(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)

※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·촬영(PDF 또는 JPG파일) 후 온라인 신청,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(압축해제 및 보안해제) /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

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

### □ 제출서류

○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

\*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**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**

※ 사실증명원, 소득금액 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2022년도 귀속분 제출

#### <공통 제출 서류>

제출서류		비고
공통 서류	지원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(<a href="https://djhousing.djbea.or.kr">https://djhousing.djbea.or.kr</a>) 신청서 작성 및 동의 활용</li> </ul>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
	지원신청자 의무사항	
	자격요건 확인각서	
	주민등록등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</li> </ul>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급대상자 : 본인(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</li> </ul>
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회조건 :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</li> <li>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</li> </ul>

### <신청자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>

제출서류		비고	
추가 서류	대학 (원)생, 취업 준비생	재학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휴학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가능</li> <li>▶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</li> </ul>
		사실증명원 (2022년 귀속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‘소득신고 사실없음’ 사실증명원</li> <li>※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</li> </ul>
		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(2022년귀속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부모 모두 제출</li> <li>▶ 부모의 이혼·시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와 소득증빙자료 추가제출</li> <li>*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</li> </ul>
	취· 창업자	재직증명서	▶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
		사업자등록증	▶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(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)
		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(2022년 귀속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(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) ※ 회사 직인필수, 당해연도 이직자 및 전년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산정</li> <li>▶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1~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※ 당해연도 창업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무소득자로 대출금액이 적을 수 있음</li> <li>▶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※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</li> </ul>
		재학증명서/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</li> <li>▶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(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)</li> <li>▶ 신청인의 배우자는 해당 서류 출력 후 서면동의 하야 스캔 첨부</li> </ul>
	청년 부부	사실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(2022년 귀속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부부 모두 제출</li> <li>▶ 소득이 없는 경우 ‘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’제출</li> <li>▶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1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(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)</li> <li>▶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1~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</li> <li>▶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※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하세요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</li> <li>※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(6개 지점)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</li> </ul>		

대상자 선정

- 선정방법 :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(서류보완일)로부터 7일 내외 선정
  - ※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, 상황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
- 선정결과 알림 : 개별통보(문자알림서비스 제공)
  - ※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,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
-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
  - ※ 단,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
  -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s://djhousing.djbea.or.kr>)에 포기 신청

참고사항 :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(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, 타 은행 송금수수료 등) 신청자 부담으로 함

선정취소

-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용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

-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
- ③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

## 5.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(분기별)

확인내용 : 주소지(임차지) 실거주 여부 / 주택소유 여부 /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

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 사항

-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위반기간 이자 미지원 및 지원종료
- 기지급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
  - ※ 자격요건 위반사항 발생 즉시 대전시에 통보 후, 은행을 통해 대출금 전체 상환 필요

## 6. 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

### □ 이자지원 중단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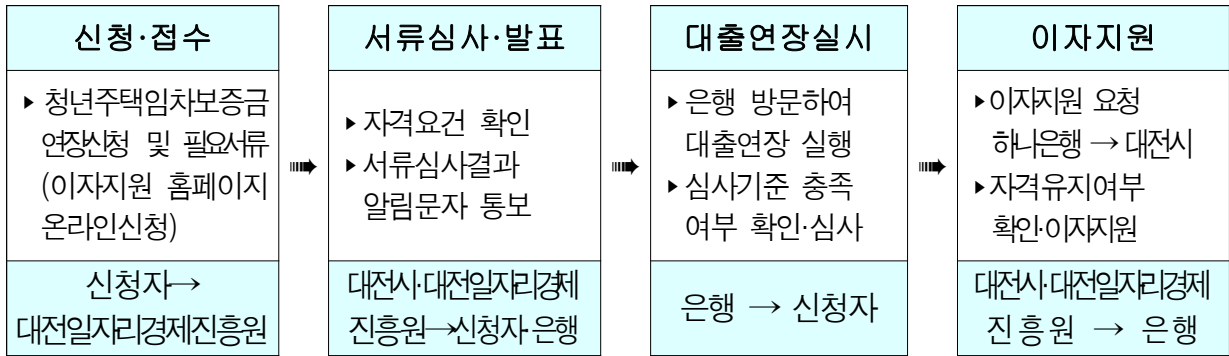
대출기간 중	기한연장 시
①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 종료(목적물 변경 제외)	※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① 본인 및 배우자 나이 만39세 초과(대출기한) ② 소득 요건 초과 ③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④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

-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확인(임차지 거주여부, 주택소유 여부, 주거급여 수급 여부) 후,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,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.

### □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

- 연장신청 : 전·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  
 ※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(<https://djhousing.djbea.or.kr>)에 연장신청 및 서류 제출
- 연장조건 :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
  -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
  -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
  - ③ 나이, 소득요건 등 연장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
  -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
  - ⑤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 상환
-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
 ※ 만료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,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을 수 있으니 **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추천**  
 ※ 기한 연장 불가 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연장 조건 필수 확인

○ 절차



## 7. 기타사항

-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**생애 1회**로 제한합니다.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.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,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거나,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.

사업자 선정 문의	대출가능여부 조회,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☎ 042-380-3033, 3031 대전광역시콜센터 ☎ 042-120	<b>하나은행 6개 지점</b> 대전시청점 ☎ 621-1111, 갈마동지점 ☎ 522-1111 오정동지점 ☎ 632-1111, 유성구청지점 ☎ 863-1111 대흥동지점 ☎ 253-1111, 가오동지점 ☎ 721-1111

※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1부. 끝.